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2216 지방세감면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광역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시 ○구 B¹⁾ 도로 234m² 및 ○○광역시 ○구 C 도로 51m²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가 작성한 별지 기재 'D'은 분필 전 번지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광역시는 'E공사' 사업의 시행(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5.

1. 10. 원고 소유이던 ○○ ○구 D 답 234㎡, F 답 51㎡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하였고, 원고에게 토지보상금으로 61,26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05. 1. 1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D 답 234㎡, F 답 51㎡ 토지는 2011. 11. 2. 인근 토지들과 함께 ○○ ○구 D 1,388㎡ 도로로 합병되었다가 2023. 6. 23. ○○광역시 ○구 B 도로 234㎡과 C 도로 51㎡로 분할되었다(이하 원고가 소유하였던 위 토지를 합병 및 분필 전 후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고 2009. 2. 2. ○○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G로 '도로사용(공용) 개시'를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 약 16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2. ○○광역시를 상대로 환매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²⁾ 2021. 5. 13. 피공탁자를 '○○광역시'로 하여 토지보상금 61,262,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23. 1. 12. '○○광역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21. 5. 26.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해당 결정이 2023. 1. 28.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42399,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해당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

2)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은 최초 2021구합52291호로 진행되었다가 2021가단242399호로 재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2023.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표준액 326,805,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15,043,7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0. '이 사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2023. 10. 20.자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3. 11. 29. 이 사건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원고는 사업이 종료된 2009. 2. 2.로부터 10년이 지나 환매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종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상 환매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광역시와 사이에는 토지보상금 상당액을 협의 중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갖게 되었을 뿐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2023. 10. 19.자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24.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표준액 326,805,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2,943,680원, 지방교육세 1,294,360원, 농어촌특별세 647,180원 합계 14,885,220원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환매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면제하여 달라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3.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면신청을 반려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현재까지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토지보상금 상당액을 매도자인 ○○광역시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화해권



고결정에 따라 쟁점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갖게 되었을 뿐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하겠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또한 해당되지 않아 이를 반려함.

마. 원고는 2024. 4.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현재 위 조세심판 청구가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인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인바, 원고는 2024. 4.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협의취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가 ○○광역시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환매권을 재판



상 행사하여 선행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환매권이 인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권 행사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은 2009. 2. 2. 이미 종료되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환매권은 선행 사건의 소 제기 당시 이미 행사기간 10년이 도과되어 소멸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광역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상 환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인인 ○○광역시에 그 환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 등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를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당연히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환매권 행사의 효력 등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



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더라도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를 충족한다면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참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



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으며,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환매가격이 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보다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환매권자에게 그 환매가격과 그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등 참조).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나 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98다324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에는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경우에는 선행사건 소제기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제91조 제1항 중3)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

3)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



년 이내에'라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개정 토지보상법에 의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은 ○○광역시와 원고 사이에 사법(私法)상 매매계약인 유상취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잔금 지급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광역시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위 토지를 취득한 상태로 볼 수도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고,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경정거부 및 이 사건 이의신청 경위와 각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역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는 인정되나, 선행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환매권은 이미 행사기간 10년이 도과된 상태여서 그 취득 원인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는 아니므로, ○○광역시와 사이에 그 취득 대금에 관하여 협의 중인 상태에서는 사실상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전제로 원고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고, 취

년 이내'로 제한시킨 부분이다.



득세 면제 요건도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존재가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해당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2021. 5. 26.자 환매'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의 기판력은 원고가 ○○광역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만 발생될 뿐이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환매권 및 환매권행사의 요건 등에 미치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환매권 발생 및 행사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협의취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이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법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2005. 1. 10.이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완료일은 2009. 2. 2.이므로[도로사용(공용)개시에 관한 공고(○○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G)],⁴⁾ 사업종료일인 2009. 2. 2.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적법한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1. 4. 2. ○○광역시를 상대로 환매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291호)를 제기하였고, 2021. 5. 13.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는바, 선행 사건의 소제기 당시 원고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이미 그 행사기간의 종기인 2019. 2. 2.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

4) ○○광역시 역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사업은 2009. 2. 2. 도로사용(공용)개시 공고로 완료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환매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갑 제2호증의 4 참조),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의 완료가 2009년경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의 7, 청구원인 참조).



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광역시의 위임을 받은 ○○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2023. 11. 2. '환매금액'을 139,583,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공문으로 환매권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법에서 정한 발생 및 행사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에 따른 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와 ○○광역시 사이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환매금액 상당액을 받고 양도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취득 원인은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마쳤을 때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공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기 지급한 수용보상금은 61,262,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역시가 산정한 환매대금 상당 가액은 139,583,000원인바, 위 협의가 계속 중이라고는 하나 원고가 기 지급한 금액이 위 가액의 43%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환매대금의 잔금지급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3

재판장 판사 호○○

판사 신○○

판사 임○○



별지

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12.28>
3.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



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불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③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④ 삭제 <2021. 12. 31.>

⑤ 삭제 <2021. 12. 31.>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에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9. 5. 31.>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2016. 8. 11., 2018. 2. 9.>



-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⑨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⑪ 삭제 <2017. 12. 29.>
-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⑬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 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8.10 법률 제18386호에 의하여 2020.11.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끝)